

재해구호 상황보고 개요

- 구호기관(시·도, 시·군·구)은 이재민, 일시대피자 등 발생 시 지체없이 구호 실시
- 재해구호 상황을 행정안전부(재난구호과)에 보고(시행규칙 별지제1호)
 - 보고주체 : 시·군·구 ※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 보고사항 확인·관리·지원
 - 보고시기 : 이재민(일시대피자) 발생 즉시부터 귀가 완료 시까지
 - ※ 재난기간 동안 1일 4회*(03시, 08시, 14시, 20시 기준) 보고, * 중앙재난대책본부 보고 시기 등에 따라 시간 유동적
 - 보고내용
 - 이재민, 일시대피자 등 발생 현황(시설별 귀가·미귀가 세대·인원)
 - 임시주거시설 제공, 구호물자 지급,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 조치 현황
 - 보고방법 : NDMS(재해구호 상황보고) 보고 원칙('20년~)
 - ※ NDMS → 재난관리 → 복구 → 재해구호 상황보고 → 재해구호상황보고서 작성*
 - * 수정이 필요할 경우 다음 보고서로 작성(기존 보고서 삭제 금지), 기타 사항에 변경사항 입력

NDMS 재해구호상황 보고 시 유의사항

- NDMS에 입력된 일시대피자·이재민 수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호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, 대·내외 통계로 수시 활용하고 있어 NDMS 구호상황 보고 철저

◆ 일시대피자·이재민 통계 일원화 체계 구축

- 재난총괄·주민대피·주택피해조사 부서등과 긴밀히 협조하여, 대내·외로 사용되는 일시대피자·이재민 통계는 NDMS '구호상황보고' 통계로 일원화

◆ 일시대피자·이재민발생 즉시 NDMS에 입력

- ※ 주민 대피 명령(예상)시, 대피담당부서와 대피지역·세대·인원 등 수시(사전) 공유하고, 실제 대피자를 임시주거시설별 '일시대피자' 로 수시 입력
- *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(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-1657호, '21.5월) 참고

◆ 일시대피자·이재민현황 수시 현행화(귀가 완료 시 까지)

- ※ 주택피해유형·미귀가 사유·귀가 예정일 등 기타 사항에 입력

◆ 주택피해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NDMS 권한 부여(주택피해조사·복구부서)

- ※ NDMS-재난관리-복구-자연재난-사유재산피해신고-사유재산피해시설별조회 또는 NDMS-재난관리-복구-복구계획-피해상황총괄표및증감표-피해상황총괄표의 이재민수를 실시간 확인하여 NDMS 구호상황보고에 수시 반영(이재민수는 주택분야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지급대상보다 적지 않도록 유의)